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 대 통 관 管 事 人

2015년 12월 31일

## 국무총리 황교안

## 최경환

● 대통령령 제26829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 중 “제42조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을 “제42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물량내역서를 열람 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대해서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2호에 따른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는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어야 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 · 원가계산 · 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 · 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제40조제2항 단서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로 한다.

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공사입찰에 대해서는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1.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공사 제42조제6항 중 “제4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자의 입찰가격(공종별 입찰가격을 포함한다), 자재, 인력 및 장비조달가격의 적정성”을 “제4항에 따른 종합 심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입찰자의 계약이행실적, 인력배치계획, 사회적 책임 이행 노력 및 입찰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47조의 제목 중 “동일가격입찰”을 “동일가격 등의 입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찰한자가 2인”을 “입찰한자가 2인(제42조제4항에 따른 공사의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의 합산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하되, 해당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사의 규모 ·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

제63조제1항 중 “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구분 · 계리”를 “구분하여 회계처리”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0호 중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를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2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의 대상자로 선정된 후”를 “종합 심사 낙찰자 선정과정에서”로 한다.

제86조 제6항 제1호 중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로 한다.

제118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42조 제7항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위원회

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7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5033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 본문 및 단서 중 “2013년 12월 31일”을 각각 “201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액수의 계약에 대한 적용례)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0조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항 · 제6항 · 제7항, 제42조 제4항 · 제6항 · 제7항, 제47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제10호 · 제14호의 2, 제86조 제6항 제1호 및 제118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이유

조달제도 개선을 통하여 서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 구매 등에 대한 소액 수의 계약을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경쟁입찰 중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분야의 입찰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방법인 최저가낙찰제를 입찰가격, 공사수행 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평가하여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하는 한편, 2015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의 일몰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소액 수의 계약에 대한 대기업 · 중기업 참여 배제(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사회적 약자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 · 구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 · 기술 등이 요구되는 일부 계약을 제외하고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함.

#### 나.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대통령령 제222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2조 제4항)

1)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 원(2016. 1. 1.부터 시행 예정 금액 기준이며, 현행은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 낙찰, 공사품질의 저하 및 산업재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업찰의 경우에는 입찰가격뿐만 아니라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도입함.

다.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 일몰 연장(대통령령 제22660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1)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고 있음.

2)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중 일부 공공기관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혁신도시 청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공사에 대하여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는 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법 제처 제공>

###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한민국 국립현대미술관

2015년 12월 31일

## 국무총리 학교안

국무위원부  
기획재정부  
장관

치 거 한

● 대통령령 제26830호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	
가.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	55
나. 보석 · 진주 · 별갑 · 산호 · 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제품	92만 6천원 + 463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다. 고급 시계, 고급 가방	37만 4백원 + 185만 2천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라. 로열 젤리	27